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3. 12. 1.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희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7일

. 희부일자 : 1993년 11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 97 회 정기회

.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 12. 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 액을 되었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준칙안과 같이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임야관리에 따른 대부(사용)요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이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
-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윤 태 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책정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있는 사업등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서도 공유림의 보존, 확대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속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통폐합함에 있어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과 공유임야 관리 따른 대부(사용)요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신구조문 대비표